【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(공시송달) 공고 제 2026 - 91호】

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,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, 제62조, 동법 시행령 제69조, 제81조,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제105조 등에 의거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'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행정처분통지서'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11. 09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

1. 건 명 :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행정처분통지서
2. 근 거 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, 고용보험법 제44조 및 제61조, 제62조, 동법 시행령 제65조, 제80조, 제81조, 동법 시행규칙 제89조, 제104조 및 제105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-공시송달 명단 참조
4. 공고기간: 2026. 11. 09. ~ 2026. 11. 23.(15일간)
5. 의견제출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(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, 태영데시앙빌딩 5층 부정수급조사팀)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(F.02-6915-4062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 이재근(☎ 02-2077-613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 : 2026. 11. 09. ~ 2026. 11. 23.)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사유
1	김**	‘64.06.10.	서울 은평구 (이하생략)	행정처분통지서	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수급액 등 행정처분통지서 - 사유: 실업급여 수급 중 특수고용직 종사에 따른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 발생 사실 미신고 - 반환명령액: 1,687,430원*	폐문부재

2026년 11월 09일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장